스위스법상 DAO의 법적 성격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스위스법에는 DAO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2018년 분산원장기술(DLT) 보고서에서 DAO 법률의 제정을 검토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법 형태로 충분하며, 독자적인 DAO 형태는 해결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1] 그 결과 법인 래퍼 없이 운영되는 DAO는 사단과 조합에 관한 일반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기본 분류는 채무법(CO) 제530조 이하에 따른 단순조합(einfache Gesellschaft)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다른 법 형태를 택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이나 자원으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로 합의하면 언제나 단순조합이 성립합니다. 그 합의는 서면일 필요가 없으며, 의식적인 것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공동 트레저리의 운용 방법에 대해 투표하고 프로토콜의 성공을 함께 누리는 토큰 보유자 집단은 공동의 자원으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견해는 대부분의 스위스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와 연결된 참여자가 있는 래퍼 없는 DAO는 스위스법상 단순조합이라는 것입니다.[2] 그 효과는 심각합니다. CO 제544조 제3항에 따라 각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3] 조합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보유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을 통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은 누구든 조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Uniswap 제안에 한 번 투표한 토큰 보유자도 스위스 단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능한 분류는 민법(CC) 제60조 이하에 따른 사단(Verein)입니다. 사단은 구성원들이 서면 정관에 단체로 존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즉시 법인격을 취득하며,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DAO가 거버넌스 포럼에 게시한 정관에 비경제적 목적과 법인이 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스위스 법원은 이를 법인격 있는 사단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은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DAO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사단이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려면 상업적 영업을 하면서 CC 제61조 제2항에 따라 상업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는데, 래퍼 없는 DAO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저자는 래퍼 없는 DAO는 단순조합으로 전제해야 하며, 사단으로 보는 분석은 하나의 주장으로 원용할 수는 있지만 믿을 만한 보호 수단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주

1. 2018년 12월 14일자 연방정부 보고서, section 7.1.2(DAO 고유의 법 형태는 불필요하며 민법과 채무법의 기존 형태를 이용할 수 있음). 이 문제는 2022년 12월 16일자 디파이 보고서 section 4.4에서 다시 검토되었고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
2. Code of Obligations, SR 220, Art. 530 para. 1(단순조합의 정의) 및 para. 2(다른 회사 형태를 택하지 않은 경우의 잔여적 형태). 학설은 D편 제VII장에서 개관합니다. ↩
3. Code of Obligations, SR 220, Art. 544 para. 3(공동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부담한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 및 Art. 545(해산). D편 제VII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4. Civil Code, SR 210, Art. 60 para. 1(서면 정관 채택에 의한 법인격 취득), Art. 61 para. 2(상업적 영업을 하는 사단의 등기 의무) 및 Art. 75a(사단 재산으로 한정된 책임). D편 제V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